

#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창전동 소재 와우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시설이 보강(지붕설치 등) 되면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,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(안 제9조)
- 나.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
- 다.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를 규정함(제10조 관련 별표)

3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4. 개정조례안 : 별 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7. 12. 13 ~ 2008. 1. 2)결과, 의견사항 미반영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·의결(2008.5.16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6.12)
- 라.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정구장 등”을 “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제8조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하 계 (3월~10월)	동 계 (11월~2월)
초 기	05:00 ~ 08:00	06:00 ~ 09:00
주 간	08:00 ~ 19:00	09:00 ~ 18:00
야 간	19:00 이후	18:00 이후

제10조 중 “별표 1 내지 2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호 중 “불우소년”을 “불우소년·소녀”로 하고,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”으로, “경로자”를 “경로우대자”로 하며, “학생”을 “학생, 장애인, 국가유공자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”를 “경기단체, 생활체육관련 단체 또는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규정 중 와우산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체육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시 설 명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
1.망원동 테니스장	<p>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</p> <p>10,000원/연당</p>	<p>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</p> <p>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</p>
	<p>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</p> <p>2,000원/연당</p>	<p>3. 단체(10인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</p> <p>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</p>
2.와우산 배드민턴장	<p>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</p> <p>2,000원/연당</p>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</u></p>	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관리 조례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"운동장"이라 함은 경기장, 실내체육관, <u>경구장</u> 등을 말하며,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</p> <p>2. ~ 11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다음 각 호----- 1. ----- -----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등----- ----- 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(생략)</p> <p>②구침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, 연간, 월간,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, 매월 <u>다음 각호의 사항</u>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서울특별시 마포구침장(이하 "구침장"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사용제한) 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**현 행**

**개 정 안**

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9조(사용시간)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하계	동계
조기	05:00~08:00	06:00~09:00
주간	08:00~19:00	09:00~18:00

② (생략)

제10조(사용료)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2로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1조(초과사용료)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시는 별표 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.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.

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--- 각호의 어느 하나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시간)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하계 (3월~10월)	동계 (11월~2월)
조기	05:00~08:00	06:00~09:00
주간	08:00~19:00	09:00~18:00
야간	19:00 이후	18:00 이후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) ①-----  
별표-----

② 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초과사용료) -----

별표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li>3. <u>불우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, 군인, 학생</u></li> <li>4. ~ 5. (생략)</li> </ol>	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다음 각 호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불우소년·소녀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</u> ----- <u>경로우대자, ----- 학생, 장애인,</u> <u>국가유공자</u></li> <li>4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14조(입장권 매표)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. 다만,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때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14조(입장권매표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15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구청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략)</li> <li>② (생략)</li> </ol>	<p>제15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23조(위탁관리)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<u>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</u>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위탁관리) ----- ----- <u>경</u> <u>기단체, 생활체육관련 단체 또는 마</u> <u>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</u> ----- -----.</p>

## 현 행

### 【별표1】

####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(평일주간 기준)

구분별	적용경기	적용이외행사
말원동 테니스장	평일 10,000원 기준, 5면 50,000원	100,000원

- 토·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할
-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가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볼

### 【별표2】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(평일 2시간 기준)

기준	사용료	비 고
1면당	4,000원	- 경로우대자, 어린이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적용함 - 학생,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적용함 - 토·일·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

## 개 정 안

### 【별표】

#### 체육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구 분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
1. 평일동 테니스장	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 10,000원/면당	1. 토·일·공휴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할  2. 초과사용료는 초대한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볼
	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 2,000원/면당	
2. 와우산 테니스장	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 2,000원/면당	3. 단체(10원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